

문서번호	452.1	기안용지	전체공정 5 조 1 항
문서번호	(전화번호 463)		국장전결사항
기안기한	기안자 김동원	결재자 토지계획국장	
시행일자	5.2	기안자	결재
보존일자	기한 67.4.26	기한 67.4.26	결재일자 67.4.26
보	구획정비과장	화법 안무	
조	조관지계장	5.2.25	
기		5.2.25	
관			
협	처분지침 4/26	제작부서 4/26	
조	계획계장	법률팀	행정과
경	정지계장	법무관	
수	문서기장	총무과	
유	발	정	
신	김열	서	
참	제615.2		
제	문서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		
목			
제 1 항 내부 결재			
<p>1. 수유호지구획정비 사업지구내 신입 중 고등학교 이사장 이 등 수 보부터 학원 고지내 세도로 폐지 및 등 도로용지의 여타 토지의 교환 요청이 있어 현장을 조사 검토한바 고지내 구획정비 도로에 걸친 토지는 보통 신입 학원 소유로 되어 있어 등 도로를 폐지 하여도 지구내 가로계통상 지장이 없을므로 폐도후 폐도 용지의 등 학원 소유 여타 토지의 순행 감정 가치에 의 기 교환 하여도 사업 시행상 지장없음으로 평지 변경 도서록 같이 봄지 예정지 를 일부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p>			
제 2 항			

5-1 2월 71 서울특별시 157

5-2

서울특별시 흥정고지부 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용도지구획정의 사업지구를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지구획정의 사업법 제 46조 및 제 55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 예정지를 변경
지정하고 관계로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의과 및 성북구 건설과에
미치하고 오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협의에 공합해나라.

1966. 5. 2.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제 3 항

수신 오지 소유자 발신 시 장

제목 토지 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용도지구획정의 사업지구내에 있는 구
서창오방성지가지기 되기
이 소유도지역 대하여 도지구획정의 사업법 제 46조 및 제 5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지정서의 같이 토지 예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하오며,

2. 관계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의과 및 성북 구청 건설과에 미
치하고 있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사본 1부.

2. 토지 예정지 변경 지정서

수신처. 각 오지 소유자

제 4 항

수신 성북구청장 발신 시 장

제목 수용도지구획정의 지구 토지 예정지 예정지

158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용호지구획정의 사업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푸자 예정지를 멀침 공문과 같이 현경 지정하고 관계 도면을
송부하니 관계인의 혼란에 공할것이며, 사무 처리에 차오 없도록 할것.

- 첨부. 1. 푸자 예정지 현경 지정서
2. 푸자 예정지 일부 현경 지정도

제 5 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과장
제목 수용호지구획정의 지구 푸자 예정지 일부 현경 지정

수용호지구획정의 사업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푸자 예정지를 멀침
사본과 같이 지정 공고 하였아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공고문 사본 . 글.

제 6 안

수신 서무과장 발신 과장
제목 수용호지구획정의지구 푸자 예정지 일부 현경 지정

수용호지구획정의 사업 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푸자 예정지중 멀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일부 현경 지정 공고되어 현경 지정도 및 조서를 송부
아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공고문 사본
2. 푸자 예정지 일부 현경 지정도 및 조서 . 글.

7.16

현지 예정지 현경 조서

총점도지 등명지번지목면적	현지 예정지 면적면적
8-1-121 235-	190- 59.50 116.00
8-1-122 11-	190- 42.00 15.00
8-1-123 15- 280-	190- 160.00 150.60
8-1-124 14- 625-	190- 120.00 120.00 130.00 213.20
8-1-125 3- 421-	190- 57.00
8-1-126 5- 684-	190- 22.00 24.00 25.00
8-1-127 4380-	190- 26.70 26.60 26.12 26.60 19.00
8-1-128 81- 2-	190- 19.00 15.20
8-1-129 41-	190- 31.00
	3.57

분양 고지서 07년도 수수료

3-10

1. 납입기한. 1967년 4월 30일

2. 납부금액. 733 1000원 보통 및 가정부

또는 당면 도시세(회계) 세부과

상기 분양료 납입 고지서를 07. 4. 1.과 같은 날짜에 주
소 및 거소 불법으로 납부 기한은 07. 4. 2. 납부에 도달
할 때 까지 16주(112일)의 기간에 유효합니다.

1967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장 丁 善 产

제2조

수신 공보장

제목. 분양료 고지서 공시 종료

1. 불방 토지 구획정리비(제2차분) 분양료 납부
고지서가 납입 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법으로 주관
불능 상태로 별첨과 같이 공포 되었기 때문에 제재로
써 조치하여 주사기 바릅니다.

개정. 1. 공포문 1부

2. 명단(분양료 납입 의무자) 1부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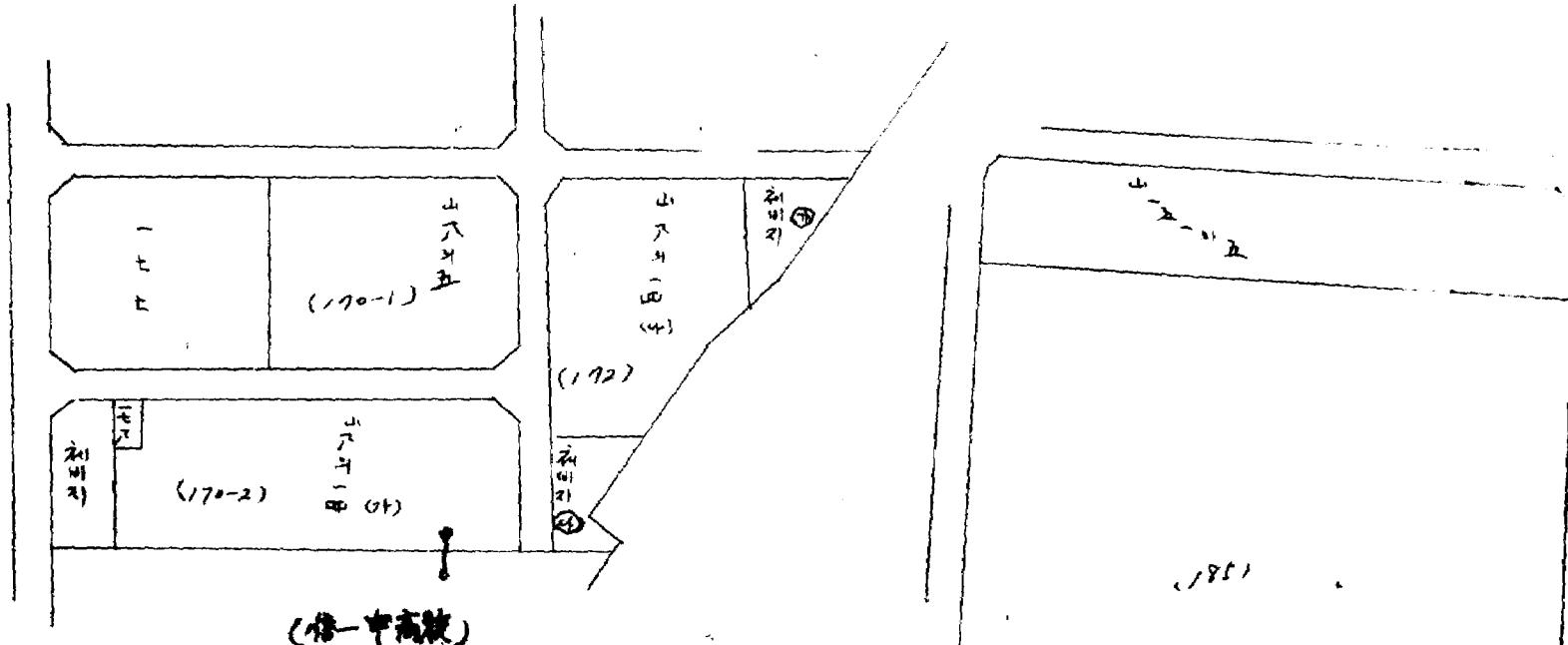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제목. 분양료 납부 고지서 공포 송달

1. 별첨과 같이 분양료 납부 고지서 구획정리비 분양

$$S = \frac{1}{1,200}$$

四
三
二



1851

四
三
二

